

2026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

경기연구원 신입직원 채용공고

경기연구원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

2026년 7월 24일

경기연구원장

1 채용예정인원

직 종	세부직종	직 급	구분모집	채용예정인원(명)
총 계				3
행정직	— (시설운영)	5급	일반	1
	— (전산)	5급	일반	1
	— (회계)	5급	장애인	1

※ 직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 전형절차

가. 제1차 시험 : 선택형(4지택일) 필기시험

○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(NCS)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.

※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(1교시)의 경우,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.

- 장애인 구분모집단위의 경우,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.
※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(NCS, 전공과목 1, 전공과목 2 등)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(가산점 포함)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합니다.
-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 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)
- 응시자격 미충족,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, 예비합격자(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)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나. 제2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및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.
 1. 모집분야에 대한 교육사항 적정성 (30점)
 2. 모집분야에 대한 경력사항 적정성 (20점)
 3. 모집분야에 대한 자격사항 적정성 (20점)
 4. 모집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(30점)
-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, 만점의 80% 이상 득점(가산점 포함)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.
-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 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)

다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.
 - － 평가방식 : 다대다, 1인당 10분 내외
 - － 평가항목(100점)
 1. 경기도 도정방향 및 주요정책 이해도 (30점)
 2. 전문지식과 상황 대응력 (20점)

3. 창의력, 의지력 등 발전가능성 (20점)

4.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(20점)

5. 예의, 품행 및 성실성 (10점)

○ 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심사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, 만점의 80% 이상 득점(가산점 포함)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.

○ 동점자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) 발생 시, 아래 기준(순서)에 따라 결정합니다.

1.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2. 제3차 시험 평가항목 순서(1→5)에 따른 고득점자

○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3차 시험 성적 차순위자 (만점의 80% 미만 득점자 제외)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3

시험과목(필기시험)

※ 1교시 인성검사(210문항, 30분)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

모집단위(직종·직급)	구분모집	시험과목		문항수
행정직 5급 (시설운영)	일반	2교시 (50분)	NCS*	50
		3교시 (40분)	산업안전관리론	40
행정직 5급 (전산)	일반	2교시 (50분)	NCS*	50
		3교시 (40분)	전산학	20
			소프트웨어공학	20
행정직 5급 (회계)	장애인	해당없음(인성검사만 시행)		

* NCS : 5개 영역(의사소통·수리·문제해결·자원관리·조직이해) / 영역당 10문항

4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사복무규정 등 내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○ 「인사복무규정」 제12조(결격사유)

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

○ 「인사복무규정」 제50조 (근무상한연령)

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.

1. 감사실장 : 65세

2. 연구직, 행정직, 공무원직 : 60세

② 직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.

○ 「병역법」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

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,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.

1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

2. 징집·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

3.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
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

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
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
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
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
마. 삭제 <2022. 1. 4.>

바. 삭제 <2022. 1. 4.>

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
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⑤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.

나. 응시연령 : 18세 이상 (공고일 기준)

다. 구분모집(장애인) 자격요건

구분모집	자격요건
장애인	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(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) 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 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
라.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※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

모집단위(직종·직급)	구분모집	자격요건
행정직 5급 (시설운영, 전산)	일반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연구원에서 행정직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.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4년 이상의 행정 경력이 있는 자 라.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마. 상기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모집단위(직종·직급)	구분 모집	자격요건
행정직 5급 (회계)	장애인	‘다. 구분모집(장애인) 자격요건’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연구원에서 행정직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.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4년 이상의 행정 경력이 있는 자 라.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마. 상기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
5 가산점 제도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시험(과목)별 만점의 5% 또는 10%	•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
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	시험(과목)별 만점의 5%	•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•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

나. 취업지원대상자

- (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시험(과목)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시험(과목)별 득점에 각 시험(과목)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10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※ 다만,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

- (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(보훈부 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확인

다.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

- (1)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또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는 각 시험(과목)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시험(과목)별 득점에 각 시험(과목)별 만점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
- (2)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인정합니다. 단,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. (최대 15점)

6

전형일정

구 분		일 정
원서접수 등	시험공고	2026. 7. 24.(금)
	응시원서 접수	2026. 8. 10.(월) ~ 8. 14.(금)
필기시험	시험장소 공고	2026. 8. 28.(금)
	필기시험	2026. 9. 5.(토)
	점수사전공개	2026. 9. 15.(화)
	합격자 발표	2026. 9. 22.(화)
서류전형	서류심사	2026. 10. 6.(화) ~ 10. 8.(목)
	합격자 발표	2026. 10. 15.(목)
면접시험	대면면접	2026. 10. 22.(목)
임용	최종합격자발표	2026. 10. 29.(목)
	임용	2026. 11. 16.(월)

※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7

원서접수 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기간

- (1) 접수방법 : 경기도 공공기관 **통합채용 홈페이지**(<https://gg.saramin.co.kr>)에 접속한 후
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※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'질문하기' 메뉴 이용

- ※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,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(수험 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)하여야 하며,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,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(2) 접수기간 : 2026. 8. 10.(월) 10:00 ~ 8. 14.(금) 17:00

- ※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(단,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)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(1) 2026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,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- ※ 1개 기관의 여러 모집단위에 접수(중복지원) 또는 다수의 기관에 접수(복수지원) 불가

(2)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(JPG, 해상도 100dpi이상, 3.5cm×4.5cm)이 필요합니다.

- ※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·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

(3)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- ※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,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(삭제)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

- ※ 단, 원서(이력서)접수 취소(삭제)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

(4)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,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.

(5) 장애인·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8

서류제출

가.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

(1) 제출방법 :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,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(스캔본) 형태로 제출(업로드)하여야 합니다.

(2)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(본원 소정양식) / 온라인 입력
- ② 자기소개서 / 온라인 입력
- ③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보훈 등 가산점 관련 증명서(해당자) / 온라인 첨부

나.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

- (1)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(출신지역, 가족관계, 신체적 조건, 출신학교 등)의 기재를 금지합니다.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(2) 입사 지원 서류 기재사항은 제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, 최종합격 후 임용 서류 등록 시 자격 검증 과정에서 입사 지원 서류 접수 내용(허위 사실 기재, 자격 기준 미달)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(3) 향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격에 따른 증명서 일체
 - 가, 나 호 : 경력(재직)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
 - 다 호 : 1)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전문학사(2,3년제)학위증명서 1부
2) 경력(재직)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
 - 라 호 : 학사(4년제)학위증명서 1부
- ② 경력(재직)증명서(해당자)
 - 응시자격에 따른 증명서와 동일시 생략가능
- ③ 자격증 사본(해당자)

- (4) 응시자격에 따른 증명서 중 경력(재직)증명서의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, 내규에 따른 경력기간 산정 시 활용
- ▶ 발행기관명 및 직인, 직위(급), 근무형태(정규직/계약직/인턴 등), 근무기간 (시간제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), 담당업무 등
- (5) 모집단위별 필요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.
- (6)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보훈 등 관련 증명서 원본은 면접 당일 제출 必

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자격미비자의 응시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,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 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다.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서류전형 ·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마.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- 바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
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사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
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합격자(과락자 등
불합격 대상자 제외)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아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응시자
(임용된 자는 제외)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‘채용서류 반환
청구서’ 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【별지 제3호서식】)를
제출(메일(recruit@gri.re.kr) 또는 우편 제출(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
1150 경기연구원 6층 인사총무부)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3조의7(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)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
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(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) 등 관련
규정에 따라,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
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
취소될 수 있고,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
취해질 수 있습니다.
- 차.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에는
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 본 공고문
은 경기도 홈페이지(<https://www.gg.go.kr>) 및 통합채용 홈페이지 등에서
확인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‘질문하기’
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